의안번호	2202321
의 뢰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4. 11. 4.
추계번호	24D23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하는 경우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0억원, 2030년 12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51억원(연평균 1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독립유공자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 (안 제1조의2 신설)	10,048	10,510	10,993	11,499	12,028	55,078	11,016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의2(정의) 신설	이 법에서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란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1895년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이 포함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조의2(정의)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서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란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1895년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이 추가로 독립유공자에 포함되게 됨

○ 1895년 을미사변·1905년 을사조약·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의 대상자는 1962년부터 기 서훈되어 이미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임

❑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임

❑ 개정안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에 포함되는 경우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에 한정하여 추정하며,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은 추계가 곤란하고, 양로지원, 요양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는 기존 예산 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은 동학농민 참여자 유족 중 지급대상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

○ 양로지원은 현재 입소정원(215명) 기준으로 연간 34억원씩 정액으로 일정

하게 지원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요양지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등록되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재가복지서비스는 현행 복지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독립유공자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안 제1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에 포함하는 경우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개정안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481명임

[표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록 현황(2024년 10월 기준)

(단위 : 명)

	신청 등록 (유족 있음)	직권 등록 (유족 없음)	합 계
1차 봉기 참여자	32	190	222
2차 봉기 참여자	481	2,819	3,300
미구분	42	283	325
합 계	555	3,292	3,847

주: 1. 1차 봉기 참여자: 1894년 3월~8월 참여 사실 확인된 자
2. 2차 봉기 참여자: 1894년 9월 이후 참여 사실 확인된 자
3. 1·2차 봉기 모두 참여한 자: 2차 봉기 참여자로 구분
4. 미구분: 참여 사실만 확인되고, 1차 또는 2차 봉기 참여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자료: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국가보훈부

(1) 보상금

❑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상·훈격·급수별로 차등하여 보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임

○ (대상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481명 모두 유족이 있으므로 이들 모두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으며, 추계 기간 동안 사망자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 (지급단가) 독립유공자의 보상금 지급단가는 등급 및 훈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2023년 월평균지급액 151만원[1)]에 보상금 단가의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4.6%[2)]를 적용함

○ (소요비용) 대상자 481명에 월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표 3] 보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 (a, 명)	481	481	481	481	481	-
월지원단가 (b, 만원)	173	181	190	198	207	-
소요비용 (a×b×12, 백만원)	9,996	10,458	10,941	11,446	11,975	54,8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생활조정수당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선순위자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임[3)]

○ (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는 481명 중 생활수준이 어려운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비율인 3.4%[4)]를 적용하여 16

1) 151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액 1,211억 2,000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급 대상자 6,674명

2) 독립유공자 중 건국훈장 5등급 유족의 보상금 단가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4.6%(2020년 1,557천원, 2021년 1,604천원, 2022년 1,684천원, 2023년 1,777천원, 2024년 1,866천원)

3) 이 법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4) 3.4% = 302명(2024년 생활조정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 8,936명(2024년 전체 수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

명으로 산출함

○ (지급단가) 생활조정수당은 3인가구, 4인가구로 구분한 후, 각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 40% 이하자, 30% 이하자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2023년 월평균지급액 26만원[5]에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0.7%[6] 적용함

○ (소요비용) 추정된 대상자 16명에 월지급단가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표 4]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 (a, 명)	16	16	16	16	16	
월지원단가 (b, 만원)	27.0	27.2	27.4	27.6	27.8	
소요비용 (a×b×12, 백만원)	52	52	53	53	53	2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합계

❑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하는 경우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0억원, 2030년 12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51억원(연평균 11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상금	9,996	10,458	10,941	11,446	11,975	54,815	10,963
생활조정수당	52	52	53	53	53	263	53
합 계	10,048	10,510	10,993	11,499	12,028	55,078	11,0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26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9억 1,800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급 대상자 918명

6) 3인가구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0.7%(2020년 214천원, 2021년 220천원, 2022년 220천원, 2023년 220천원, 2024년 220천원)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